2025년도 한·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(R&D & Pilot Program) 신규과제 공고

한국과 이스라엘은 양국 간 공동산업연구를 증진하고자 "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,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"을 통해 산업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하여 양국 산업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 「2025년 한-이스라엘 국제공동기술 개발사업」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
사업개요

1. 사업목적

o 첨단기술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이스라엘 기업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

2. 사업내용

○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간 합의에 기반하여 공동 승인하고 **양국의 산업 기업이 수행** 하는 공동R&D 과제에 자금을 지원

3. 지원 내용

- o 지원 분야는 산업기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함(단, 국방 분야는 제외)
- (R&D 프로그램) 양국 기업 간 공동 R&D를 통해 상용화 기능한 기술 개발 지원(TRL 4~6 단계)
- o (Pilot 프로그램) 양국 기업의 지식 재산권 및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잠재 고객사 승인용 시제품 제작 및 실증을 지원(TRL 6~8 단계)
- o (타당성 조사) R&D 前단계로 기술 개발 타당성 및 사업성을 조사(연중 상시 접수)

4.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

(USD/KRW = 1,200원, 단위 : 원)

구분		R&D	Pilot	타당성 조사
과제 규모		제한없음		1.2억
과제당 최대 지원금(양국 합계) [*]		24억	12억	6천만
한국 측 예산 비율에 따른 과제당 지원금**	30%	7.2억	3.6억	1천8백만
	40%	9.6억	4.8억	2천4백만
	50%	12.0억	6.0억	3천만
	60%	14.4억	7.2억	3천6백만
	70%	16.8억	8.4억	4천2백만
과제 기간		최대 2년	최대 1년	최대 6개월

- * 평가 결과 최고점 기준이며, 타당성 조사의 경우 평가등급 상관없이 승인과제비용의 50% 지원
- ** 모든 과제는 양국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예산 비율 7:3까지 조율 가능
- ※ 정부 지원 없이 민간부담금 매칭 100%로 진행코자 하는 경우 재단으로 별도 문의 바람

5. 추진절차 및 일정

○ R&D 및 Pilot 프로그램

절차	일정	비고		
사업 공고	′25.6.12.	산업통상자원부, 이스라엘혁신청		
사립 승규	25.0.12.	한국-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(이하 "재단")		
-				
		(한) 18시까지 제출(한국 본부)		
사업계획서 접수	′25.9.15.	(이) 12시까지 제출(혁신청)		
		※각국 온라인 접수시스템 모두 업로드 필수		
-				
니저 건드	(2514 4291	사전지원제외대상 분류		
사전 검토	'25년 10월 ※ 5. 제한조건 해당 여부 제출 전 반드시 검토			
연구개발계획서 평가	'25년 11월	국가별 평가(현장평가, 평가위원회)		
지원대상과제 확정	'25년 12월	평가결과에 따라 양국 정부간 협의를 통해 지원우선순위		
(양국 이사회)	(예정)	확정		
-				
	'26년			
협약 체결 및 사업수행	1~3월	양국 기업 및 재단		
	(예정)			

- ※ 상기 추진 절차는 양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o **타당성 조사**는 연중 상시 접수로, 사전 검토 및 심층 평가를 거쳐 이사회 의결 없이 재단 자체 심의하여 선정

Ⅱ 공통사항

1. 지원대상(신청자격)

-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양국 기업에 한함
- 양국 기업은 공동으로 하나의 영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
- 양국 대학이나 연구소는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, 참여시 주관연구개발기관 예산의 20% 이내가 되도록 편성
- o 국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<u>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</u>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"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^{*}"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
- *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

2.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및 지급 방법

- ㅇ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출연금)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(민간부담금)으로 구성*
- *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과 현물의 부담비율은 정해져 있지 않음
- (R&D 프로그램) [●](협약체결) 1차 지원금(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) 지급, ^②(중간평가)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중간 지원금(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%) 지급, ^③(최종평가)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(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0%) 지급
- (Pilot 프로그램·타당성 조사) ¹(협약체결) 1차 지원금(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%) 지급, ²(최종평가) 기술평가 및 사업비 정산 후 최종 지원금(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%) 지급

3.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

- ㅇ 양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비를 합산하여 제출
- o 양국의 연구개발비 비율은 최대 7:3까지 가능(국가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최소 연구개발비 비율은 30%)
- ㅇ 양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(타당성 조사 예외)
- ※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 기준은 Ⅲ. 평가기준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차등 지급, 2. 표 참고

4. 기술료 징수 기준 및 방법

가. 기술료 징수

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 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,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
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*(기술료 등의 납부)라 함
 - * 「상법」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
-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,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·유지,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
 - * 과제종료 후, 관련 기술을 통한 매출이 발생할 경우, 각국의 기업은 자국의 기술료 징수 방식을 따름

나. 기술료 납부 대상

o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

다. 기술료 징수방식

-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, 당 재단 사무총장에게 「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」를 제출
 - *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,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

라. 기술료 납부기준

- 직접실시의 경우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
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 연구개발비 상한 적용
- 제3자실시의 경우,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및 정부연구개발비 상한 적용

구분		부과기준		요율	기술료 납부 상한
직접 실시	중소 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	중견 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대기업/ 공기업	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	기술기여도 (과제협약)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제3자 실시	중소 기업	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		2.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% 이하
	중견 기업	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		5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% 이하
	대기업/ 공기업	실시계약에	따른 징수액	10%	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% 이하

*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

마. 기술료 납부기간

-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 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·발생한 매년 납부
- 당 재단의 사무총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
- 천재지변,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납부기한 변경 가능

5.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내 별첨 참고 필요

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재단 과제 수행 메뉴얼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

6. 제한조건(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)

■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,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등 적용

순번	세부내용
1	o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- 연구개발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
2	o 기 개발·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-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* NTIS(http://ntis.go.kr)의 "메뉴→과제참여·관리→유사과제" 등을 활용, 중복성 검토
3	o 의무사항 불이행 -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
4	참여제한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5	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별표2의 검토기준에 따라,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

순번	세부내용				
6	 ○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-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, 이 중 연구책임자(세부주관책임자 포함)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- 단,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0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* 참여연구자(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책임자도 포함)의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기본사업(연구기관만 해당)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정부출 연연구기관, 특정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%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% 이내에서 산정 가능 				
7	○ 중소·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-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. 단,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				
8	o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(RFP상 안전과제로 표시) 등				
9	o 상대국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, 상대국 절차에 근거하여 최종제출 되지 않은 경우 및 상대국 공고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여 사전 지원제외로 한국 본부에 통보된 경우 등				
10	o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 [*] 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 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한 개라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 * 온라인 시스템(재단 홈페이지 및 이스라엘 혁신청 홈페이지) 내 제출 *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,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,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				
11	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상대국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분을 20%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				
12	o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'공통운영요령' 및 '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' 상 사전제외, 연구개발 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				

가. 지원제외 처리기준

-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, 지원제외대상 통보 이후 3영업일 전 18:00까지 공문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평가에 상정 가능
 단,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불가
-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(공동연구책임자 제외)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
 - 1. 기업의 부도
 - 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 - 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 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)
 - 4.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)
 - 5.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*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(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%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.)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외국인투자비율이 50%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경우,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.) 이때,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 -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
 - 상기의 신용등급 'BBB'에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
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 - 6.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 -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 - 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
 - ※ 상기 5호, 6호 및 7호 결산 재무재표 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, 종속회 사가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(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)

Ⅲ 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

1. 평가 기준(양국 공통)

① 기업의 기술 및 재무적 역량	② 기업의 상업화/마케팅 역량	③ 기업간 시너지
④ 상호 보완성	⑤ 혁신성	⑥ 상업화 성공 가능성

2. 유의사항

가.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&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- o R&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&D를 추진하는 경우 등
- ㅇ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(시험, 테스트 등), 위탁과제 수행형
- o 국내에서 동일 기술 수준의 협력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, 단, 이스라엘 파트너가 해외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

Ⅳ 근거법령 및 규정

1. 근거 법령

o 「대한민국 정부와 이스라엘국 정부 간의 연구, 개발 및 기술혁신에 관한 양자협력 협정」 (2022.8월 발효)

2. 관련 규정

- o 한국·이스라엘 사업 운영요령 : KORIL-RDF HANDBOOK (11차 개정본)
-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,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등 준용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」,「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·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,「산업기술객산사업 기술개발장비통합관리 요령」,「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」,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」

Ⅴ 신청 방법 및 문의처

1. 신청 방법

ㅇ 접수기한

- 한국 기업: '25년 9월 15일(월) 18:00까지

- 이스라엘 기업 : '25년 9월 15일(월) 12:00까지

○ 접수방법(오프라인 제출 불필요)

- 한국 기업 : 재단 홈페이지 내 "Proposal Submission"*을 통해 업로드

< 한국 기업 온라인 접수 경로 >

①한국·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(www.koril.org) → KORIL Fund → Proposal Submission

②홈페이지 업로드 관련 문의: 02-2166-0810, koril@koril.org

③양식교부 : 한국·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 홈페이지(<u>www.koril.org</u>) → KORIL Fund → KORIL R&D Program → Guidelines and Forms(MS Word 양식) 다운로드

- 이스라엘 기업 : 이스라엘 혁신청 온라인 시스템 업로드

2. 문의처(담당자)

o 한 국 : 한국이스라엘산업연구개발재단 기술협력사업팀 이수아 연구원 (02-2166-0814, sooahlee@koril.org)

o 이스라엘: 혁신청(IIA) Tal Ben Avner, Israel Manager (+972-3-5118-192, <u>Tal.BA@innovationisrael.org.il</u>)

3. 추가제출 서류

ㅇ 국내 기업은 영문 제안서 및 예산표와 더불어 아래 명시된 추가제출 서류를 업로드

연번	제출서류	부수/파일형태	비고
1	국문과제요약서	1부/hwp	[첨부] 관련서식 활용
2	주관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	1부/PDF	- 표지(회계사 직인 포함), 재무상태표(표준 대차대조표), 손익계산서(표준손익계산서)를 PDF로 스캔한 파일 *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* 비영리와 상장사(거래소, 코스닥) 미제출,그 외기업은 제출(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) *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*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(예: 2024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, 2023년도, 2021년도 제출)

연번	제출서류	부수/파일형태	비고
3	사업자등록증/주주명부		
4	현재 수행중인 정부과제 목록		- 별도서식 없음
5	과제 총괄책임자 이력서 및 당 과제 담당자 인적 사항		
6	제제정보 조회용 정보입력 양식	1부/엑셀	[첨부] 관련서식 활용 대표자 및 과제 총괄책임자만 작성
7	주관 및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	1부/PDF	기업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해당 *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* "연구전담부서"는 인정 안 됨
8	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,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	1부/PDF	[첨부] 관련서식 활용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